

보도시점 (전매체) 8. 6.(수) 조간 < 8.5(화) 12:00 >

지역 벤처펀드 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 창업기획자가 지역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법인 출자한도를 30%→40%까지 확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금액의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 출자한도를 49%까지 상향하여 지역 초기투자 활성화 유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5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상호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역량을 고려하여 펀드 결성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 투자 의무 :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하여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규모가 확대되어 기업이 성장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인수·합병을 통해 벤처투자회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 기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운용해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총회 후 14일 이내 중기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 운용 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이미 결성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해산 후 재결성 절차없이 기존 조합원의 전원 동의만으로도 벤처투자조합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여 펀드 운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 장	강신천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연학 (044-204-7711) 서은별 (044-204-7718)

현행	개정안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인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서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법인. <u>다만, 법인의 총 출자금액은 개인투자조합 결성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u>	7. ----- ----- ----- -----.
<신설>	다만, 개인투자조합 결성액 대비 법인의 총 출자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이 개인투자조합(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20퍼센트 이상 출자하는 경우: 49퍼센트
<신설>	나.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등이 개인투자조합에 20퍼센트 미만 출자

<신 설>

8. ~ 10. (생략)

② ~ ⑤ (생략)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산정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 <단서 신설>

가. ~ 마. (생략)

2. 3. (생략)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삭제

②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
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
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하는 경우: 40퍼센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30퍼센트

8.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 후단에서 “민간 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자”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⑦ 제6항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

1. -----

----- . 다만, 제5조제1항
제7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개인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수도권 외에 소
재한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

—————

—————

—————

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4. 결성 총회 의사록 사본

5. ~ 8.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 사본 또는 조합원 총회 의사록 사본

5.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운용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이후에도 벤처투자회사가 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하여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 전환을 의결한 조합원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